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47
----------	------

2020년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0년 8월 12일
다. 회부일 : 2020년 8월 21일
라. 상정일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오관영)

가. 제안이유

-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NPO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왔음.
- 최근 시민들의 사회참여 의지가 높아지면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단위, 생활권 단위 공익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단체 간 교류·성장 지원, 지역 의제해결 지원 등 권역단위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하고자 함.

- 서울 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NPO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단체와 자치구의 협치, 권역 내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 간의 협력지원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그물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기존 권역별 NPO지원센터의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역시 민간의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이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 기반 중간지원 필요
 - 다양한 민간단체,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 가능
 - ⇒ 직접운영 대비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
- 다) 위탁사무 내용(위탁 대상 사무, 범위 등)

1) 사업목적

- 서울 서남권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서남권 : 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2) 위탁사무 내용

- ① 서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 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
- ② 서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 육성과 상담·컨설팅
- ③ 서남권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④ 서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⑤ 서남권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⑥ 서남권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
- ⑦ 그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명 칭 :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 개관시기(안) : 2021년 1월
- 소 재 지(안)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98, 7층 (당산동1가)
- 시설규모(안) : 291.71 m^2
다목적실, 협업보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



	
지역여건	지하철2·5호선이 교차하는 영등포구청역 부근으로 서남권 7개 자치구 내 소통·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교통접근성이 뛰어남

마) 민간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2021.1.1. ~ 2023.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적격자 심의 → 수탁자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1년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700백만원
(인건비 300, 운영비 136, 시설비 250, 일반관리비 14)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0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2020. 7. 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설치)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센터의 위탁)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 서남권 풀뿌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NPO 활동 공간 제공 및 NPO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영등포구에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현황

개관	2021년 1월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98, 7층 (당산동1가)
규모	291.71m ²
위치 및 전경 전경	 
주요 시설	· 다목적실, 협업보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

- 서남권 NPO지원센터의 운영은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1년 1월부터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은 7억원 규모임.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내(2020.1.1.~ 2022.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공모
- 사업비: 700백만원('21년도 예산편성 추진)
※ 인건비 250, 운영비 196(임차료 96, 자산물품취득비 100), 사업비 254
- 위·수탁 사무
 - 서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 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
 - 서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 육성과 상담·컨설팅
 - 서남권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서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서남권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서남권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
 - 그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민간위탁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관련 계획(‘서울 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운영계획’) 수립 이후 2013년 11월에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였고,
 - 2015년 3월, 시장요청에 의해 제2 NPO센터(권역별 센터) 추가 설립 검토를 통해 2018년 6월에는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2019년 9월에는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였으며,
 - 이번 동의안은 ‘민선 7기 시정4개년 계획’에 따라 「서울시 서남권 NPO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민간위탁 추진 경과〉

- 「(가칭) 서울 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운영계획」 수립(2012. 11.)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5.)
- 서울시 NPO지원 센터 민간위탁(2013. 11.)
- 시장요청 - 제2 NPO센터/권역별 센터 추가 설립 검토(2015. 3.)
- NPO지원 중장기 전략 연구 시행(NPO지원센터)2015. 7~11.)
- 지역 여건 및 공간 확보 가능성 고려 동북권 우선 타진(2016. 2.)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동북권 창업지원센터) 수립(2016. 4)
 -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내 NPO센터 공간 확보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계획」 수립 (2017. 7.)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2017.9.)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17. 12.)
-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수탁기관 선정(적격자심의위원회) (2018.3.)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임시공간 마련(창동역 부근) (2018.4.)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2018. 6.)
-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 수립 (2019.1.)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

⇒ 지역의제 해결을 촉진하는 권역NPO지원센터 2개소 설립

- 시민사회의 수요와 시민사회 내 협력체계가 마련된 권역 대상
- '19~'21년 순차적 설치

* 도심권은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제외

-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계획 수립 (2019. 6.)
-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2019. 7.)
-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동의안 제출 (2019. 8.)
- 「서남권 NPO지원체계 수립 기초조사」 실시 (2019. 9.)
-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설립 계획」 수립 (2020. 6.)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심의 (2020. 7.)
-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2020. 7.)

- 서울시에서 이미 운영중인 서울시 NPO지원센터(2013년)와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2018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2020년) 및 추가로 설치하려는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의 위치, 사업 범위, 인력, 규모 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시설명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서울시 NPO지원센터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심의기구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사업범위	서남권 7자치구 (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동남권 4자치구 (서초·강남·송파·강동)	동북권 5자치구 (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	서울시 전역				
사업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남권 비영리단체 활동가 역량강화 · 서남권 내 공익활동 관계망 형성 · 권역 단위 공익활동 의제 발굴 및 공익활동 촉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권 비영리단체 활동가 역량강화 · 동남권 내 공익활동 관계망 형성 · 권역 단위 공익활동 의제 발굴 및 공익활동 촉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권 비영리단체 활동가 역량강화 · 동북권 내 공익활동 관계망 형성 · 권역 단위 공익활동 의제 발굴 및 공익활동 촉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단위 NPO 지원 총괄 · NPO 역량강화, 지속가능성 지원 · 공익활동 기반조성 및 제도·정책 발굴 · NPO 정책역량 강화 등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당신로 98 (민간임대)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15, 4층(가락동) (민간임대)	<table border="1"> <tr> <td>임시 공간</td> <td>정식개관</td> </tr> <tr> <td>도봉구 도봉로 (창동) 두승 빌딩 2층</td> <td>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창동) 세대용합형 복합시설 2층</td> </tr> </table>	임시 공간	정식개관	도봉구 도봉로 (창동) 두승 빌딩 2층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창동) 세대용합형 복합시설 2층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 2층 (서울시 행정재산)
임시 공간	정식개관							
도봉구 도봉로 (창동) 두승 빌딩 2층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창동) 세대용합형 복합시설 2층							
규모	291m ²	386m ²	284m ²	400m ²				
주요시설	다목적실, 협업보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	다목적실, 협업보육실, 회의실, 기록자료실, 사무실 등	다목적실, 협업보육실, 회의실, 기록자료실, 사무실 등	다목적강당, 교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명 - 센터장 1, 사무국장 1, 직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 - 센터장 1, 사무국장 1, 직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 - 센터장 1, 사무국장 1, 직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명 - 센터장 1, 실장 2, 직원 12 				

민간 위탁 금	700백만원	700백만원('20년도)	791백만원('20년도)	2,483백만원('20년도)
민간 위탁	예정	2020년 (사)커뮤니티허브공감	2018년 (사)강북풀뿌리활동기포럼	2013년 (사) 시민

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최근 생활 속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지역 및 생활권 단위의 공익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동 센터가 권역단위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시민단체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능통한 기관(단체)이 직접 동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의 설치 및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1조를 제시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중립적 성향의 전문성 있는 기관이 선정될 경우 비영리단체 역량강화 및 지역 단위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남권 NPO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타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여부와 추진 근거의 타당성 및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 등 다음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서울시에는 2013년에 위탁한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NPO 활동공간 제공 및 역량강화 지원, 공익활동 촉진” 등 지원활동을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 동북권 NPO지원센터와 동남권 NPO지원센터 또한 설치(각각 2018년, 2020년) 하였으나,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관계 정립 불명확, 업무 중복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저해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에 따라 서남권 NPO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시 전역의 NPO를 지원하는 ‘서울시NPO지원센터’는 권역별 NPO지원센터의 산규 설치(동북권, 동남권) 이후에도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 (2018년 19억 4천만원, 2019년 22억 8천만원, 2020년 24억 8천만원)하고 있는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에 대한 검증이 먼저 요구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둘째,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7억원 규모의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그 중 임차료 1억원 규모의 운영비 등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가 64.0%인 상황(사업비 36.0%)에서 예산 투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금 7억원
 - 인건비 250, 운영비 196(임차료 96, 자산물품취득비 100), 사업비 254
- 한편, 2019년 제4차 동남권 NPO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2019년 7월) 회의록에서와 같이 이번 서남권 NPO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020년 7월)에서도 권역별 설치 필요성과 사업의 구체성 및 성과에 대한 의문 등이 여전히 제기된 바 있음.

2020년 7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발췌

00의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실무하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런 NPO가 한 6명이 근무하잖아요? 이분들이 없으면, 이 센터가 없으면 NPO 활동이 안 되나요?

00의원: 현실적으로 저도 봐 오고 있지만 건물 인건비 다 내 가면서 5명이 있어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서울에 하나 있으면 어디서나 한 시간이면 전절 타고 다 오는데,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옥상옥의 불필요한 센터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00의원: 저는 서울시 전체 NPO 따로 있고, 권역별 NPO를 만들어서 돈을 더 쓰게 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 셋째, 서남권 NPO지원센터의 관할영역이 타 권역과 달리 해당 자치구에 7개에 달하고,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다른 권역별 NPO 지원센터에 비해 규모가 가장 작은 바, 공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비교·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2020년 8월 기준 총 2,429 단체>

	권역	비율	소재지별 등록 수								
1	동북권	19.0	합계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463	66	61	48	63	39	69	53	64
2	서북권	16.9	합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411	102	92	217					
3	서남권	23.0	합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558	61	52	61	45	155	90	94	
5	동남권	17.2	합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19	138	120	103	58				
7	도심권	23.8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578	326	151	101					

- 넷째, 광역자치제와 기초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권역별 NPO 지원센터의 설립”은 지방자치제도와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미 금천구, 노원구 및 중랑구에서는 자체 NPO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 필요시 추가적인 센터 조성은 “자치구”에서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서울시 자치구 NPO지원센터 현황〉

(2020. 8월 기준)

연번	자치구	근거 조례	센터명	개소	직영/위탁 (수탁기관)	인력 (명)	예산 ('20년/백만원)
1	금천구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천구NPO지원센터	2016	직영	-	-
2	노원구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 시민사회(NPO) 지원센터	2017	직영	-	1.5
3	중랑구	-	중랑구NPO지원센터	2019	직영	3명	69
4	구로구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구로구 공익활동 지원센터	2020.11 예정	위탁예정	3명 예정	230 (예정)

- 다섯째, 광역 시·도 NPO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에서 NPO(NGO)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광역 시·도의 NPO지원센터와 서울시 센터의 예산과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서울시의 NPO지원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 된다고 하겠음.

<광역 시·도 NPO지원센터 현황>

(2020.3.31.기준)

연번	지역	근거 조례	센터명	위탁연도	수탁법인	인력 (명)	예산 (백만원)
1	서울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시NPO지원센터	2013	(사)시민	17	2,483
			서울사동북권NPO지원센터	2018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5	791
			서울사동남권NPO지원센터	2020	(사)커뮤니티허브공감	5	700
2	경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사)경기시민연구소	8	761
3	부산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2016	(사)부산시민재단	6	612
4	광주	광주광역시 엔지오(NGO)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NGO센터	2015	(사)광주NGO시민재단	5	515
5	대전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NGO지원센터	2015	(사)공공	4	602
6	대구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016	(사)대구시민센터	6	625
7	충북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북NGO센터	2012	(사)충북시민재단	5	301
8	충남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2016	(사)충남시민재단	6	860
9	경남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사)경남공익재단	5	450

※ 제주도 센터 준비중

- 여섯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서남권 NPO지원센터 조성 및 민간 위탁의 추진근거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1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 동 규정은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에 대한 추진 근거이며, ‘권역별 NPO지원센터’의 추진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적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동 회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바, 센터설치 근거의 사후치유적인 조례 개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권역별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곱째, 서울시에는 시민사회, 공유경제, 청년문제 등 사회혁신활동 수행 단체를 지원하는 “서울혁신센터”,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청년청”,

“청년허브”, “여성 NGO 지원센터”¹⁾ 등 NPO 등을 지원하는 유사한 민간위탁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 업무의 구분과 지원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권역을 기반으로 하는 NPO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2. “NPO”란 시민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 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 종합적으로 동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 설치되어 있는 센터와의 중첩성, 예산 대비 효과성,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인 서남권역 단위의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기에 부합되는 공간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¹⁾ 2017년 3월, 동 센터는 ‘서울특별시 여성 NGO지원센터’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현재, 동 센터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로 변경함.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747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NPO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왔음
- 나. 최근 시민들의 사회참여 의지가 높아지면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권 단위 공익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권을 중심으로 단체 간 교류·성장 지원, 생활의제해결 지원 등 권역단위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하고자 함
- 다. 서울 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NPO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단체와 자치구의 협치, 권역 내 다양한 중간 지원조직들 간의 협력지원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그물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라. 기존 권역NPO지원센터의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역시 민간의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이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마.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 기반 중간지원 필요
- 다양한 민간단체,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 가능
⇒ 직접 운영 대비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위탁 대상 사무, 범위 등)

1) 사업목적

- 서울 서남권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서남권 : 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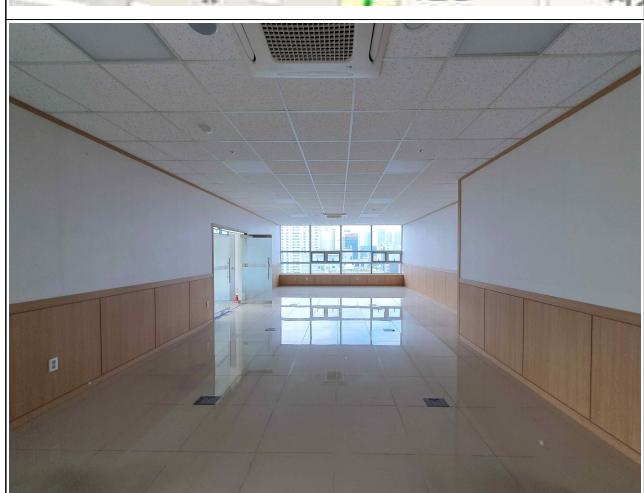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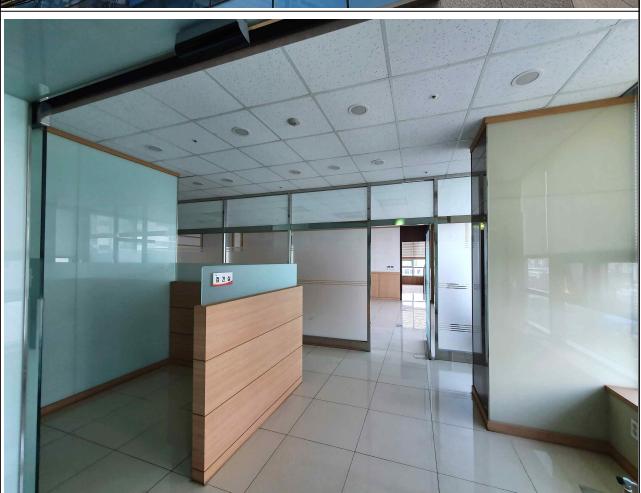
2) 위탁사무 내용

- ① 서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
- ② 서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과 상담·컨설팅
- ③ 서남권 NPO의 네트워크 및 자치구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 ④ 서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⑤ 서남권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⑥ 서남권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
- ⑦ 그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명 칭 :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 개관시기(안) : 2021년 1월
- 소 재 지(안)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98, 7층 (당산동1가)
- 시설규모(안) : 291.71 m^2

다목적실, 협업보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

 <p>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안)</p>	
	
지역여건	지하철2·5호선이 교차하는 영등포구청역 부근으로 서남권 7개 자치구 내 소통·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교통접근성이 뛰어남

마. 민간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2021.1.1. ~ 2023.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적격자 심의 → 수탁자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1년 소요예산 : 750,000천원('20년도 예산편성 추진)
 - 민간위탁금 700백만원 (인건비 300, 운영비 136, 사업비 250, 일반관리비 14)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2020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2020. 7. 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설치)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센터의 위탁)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서울협치담당관 공익활동지원팀 이병국 (☎2133-6561)